

제64조 납 부



제64조의 요약

$$\text{○ 납부할 세액} = \left(\begin{array}{l} \text{법인세액 산출세액(=과} \\ \text{세 표준} \times \text{세율(2억까지} \\ \text{10\%, 2억 초과부터는} \\ \text{22\%))}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감면세액} \\ \text{중간에납세액} \\ \text{수시부과세액} \\ \text{원천징수된 납부세액} \\ \text{농지세액} \end{array} \right] \quad (\text{여기서 가산} \\ \text{세는 제외함})$$

○ 납부기한 및 분납

- 납부기한 : 본 법 제60조의 신고납부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 분납 일반법인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 분납세액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제64조

【납 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I. 법인세 납부방법

1. 본 조의 개관 (법 제64조)

본 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총 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기납부세액인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과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및 농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신고납부세액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과세표준신고전까지의 이미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신고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해주는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원천징수당한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소득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라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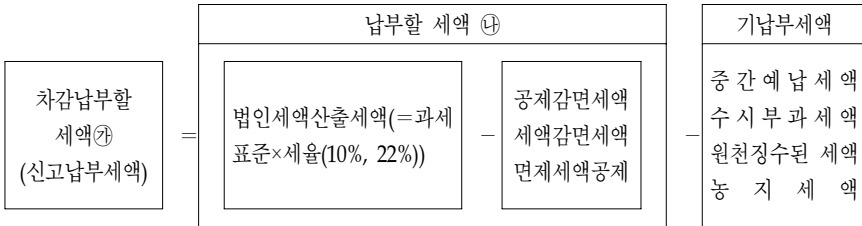
제반 선납세액을 공제한 후의 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법인은 분납할 수 있는데 신고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일반신고납부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반법인은 1개월(12월말 결산법인은 4월말) 이내, 중소기업이면 2개월(5월 말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법인세납부액 계산방법 (법 제64조제1항)

1) 법인세신고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본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종료일부 3개월)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는데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차감된 순세액을 신고납부세액 혹은 차감납부할 세액이라 한다.



본 항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공제한도가 되는 법인세액의 범위

상기 산식상의 납부할 세액 ①은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인바, 공제대상금액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된다. 이밖에 신고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만을 공제하여 계산되는데, 공제세액에 이미 부과된 가산세액이 포함되면 가산세액을 제외한 순수한 공제세액만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세액이 계산된다. 가산세는 최종단계인 신고납부세액에 추가된다.

2)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의 공제항목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① 면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액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이 모두 차감되는데 개념표현상 법인세법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인세가 공제되거나 면제 및 감면된 세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은 본 법 제59조에 해설된 납부세액계산을 위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면제세액 ·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신고납부세액 계산과정에서 공제될 세액 중 감면세액이나 면제세액은 본 법 제55조나 제59조의 해설에서, 세액공제액은 본 법 제57조와 제58조의 해설에서, 중간예납세액은 법 제63조의 해설에서, 수시부과세액은 본 법 제69조의 해설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2) 중간예납세액 (법 제63조)

①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이란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조세부담의 분산 내지 조세회피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간에 예납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인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한 모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50%를 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아예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후자의 방법에 의해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② 중간예납세액 대상금액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가산세는 포함되고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제외됨)에서 직전 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감면세액은 소득공제 등 소득에서 공제되어 간접적으로 감면효과가 있는 것은 제외되며, 감면범위가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감면세율범위 등에 의하여 계산된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를 새로이 계산한다면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세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이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와 같이 분납할 수 있다.

(3) 수시부과세액 (법 제69조)

법인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나,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기타 조세포탈우려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채권의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시부과는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하여 추계조사에 의한다. 수시부과는 원천징수나 중간예납과 같이 하나의 예납적 조세제도로 보기 때문에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시부과를 한 경우라도 법 제60조에 의한 법인세의 정기신고는 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된 세액 (법 제73조)

원천징수란 소득귀속자가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수취소득에 대해 예납적으로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써 소득수취자가 과세기간 동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기에 앞서 그 소득지급자가 소득수취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을 소득지급시에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소득지급자가 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이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건 개인이건 모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일반이자소득, 신탁재산귀속이자소득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자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25%를 그 지급소득으로부터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의 실제 지급일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수취자에게 소득지급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소득지급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부분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천징수에 관한 제반 의무자는 당해 소득지급자 뿐 아니라 그 의무를 위임받은 대리인, 다른 법인의 어음 등을 인수·매매·중개하는 증권회사 등과 같이 대리 및 위임의 의제를 받는 자, 해산·청산 등에 관련된 청산인,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 및 합병 또는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 등의 승계자 등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3. 원천징수된 세액의 계산방법 (법 제64조제1항제4호)

본 법 제73조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시 일정률에 의한 세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받는 납세의무자로서의 법인은 그 소득의 수취시 일정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 당하였기 때문에 동 원천징수된 세액은 과세표준신고시의 납부세액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다른 기납부세액과는 달리 납세의무자 자신이 아니고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고려할 점이 많다.

1) 원천징수된 일반세액

(1) 정상적인 원천징수된 납부세액

법인세는 귀속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인데 소득지급자는 원천적으로 당해 이자소득 등을 발생시킨 법인에 대하여 적법한 원천징수절차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소득귀속자·소득귀속시기·원천징수된 시기·원천징수당한 법인·적용한 원천징수세율 및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본 법 및 기타의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당연히 당해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선납세액계정 등과 같이 환급될 자산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순액처리(익금산입하여야 함)하거나 당기비용처리(손금불산입함)

한 경우에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는 된다.

(2) 착오로 원천징수된 세액

법인의 신고납부 법인세액 계산시 공제할 원천징수된 세액이란 본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에 적법히 원천징수된 세액인데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에 의거 잘못 징수납부된 원천세액은 본 법 제73조에 의한 적법한 세금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별도의 환급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 당해 소득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대의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잘못하였다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차감 공제받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나중에 환급되었다면 그 환급받은 세액만큼은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

① 개인·다른 법인명의

법인의 예금이나 적금 등이 특수목적상 계열기업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계열기업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된다. 법인 이외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법인의 세액이라도 당해 법인의 이자소득이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종전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아니면 무조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가, 다른 법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만은 공제대상이 되나 법인이 아니라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법인세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었다.

결론적으로 현행의 관행은 개인명의로든 법인명의로든 상관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당해 법인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상황이나 명의기재와는 상관없이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② 명의이전 미결·탁인명의 예금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자산 중 예금의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예금을 아직 개인명의로 계속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적금을 드는 경우 여신한도 등으로 인하여 계열기업이나 임직원의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의 예금·적금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본 법 제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소득으로 합이 타당하며 따라서 원천징수세액도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됨이 타당하다.

2) 중도매매채권·증권의 보유기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거래정산

(1) 중도매매채권·증권 원천징수세액 보유기간 안분계산

법인의 채권이나 증권을 이자계산 지급정산기간의 중도에 매매하면 당해 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하는 때에 자기가 보유한 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법인이 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직접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었다.

즉, 중도매도자는 자신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최종보유자는 채권을 이자계산의 전기간 동안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그러나 중도매도자나 최종보유자 모두 자신이 채권을 보유한 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면 된다고 본 법 제73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액 등】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 등의 이자 등(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인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 중도매매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보유기간 안분계산 이유

① 개인소지채권의 만기시 법인에 양도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의 조세회피

상기 시행령의 신설 전에는 채권·증권을 최종적으로 상환받는 법인이 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총 원천징수세액 중 당해 법인이 보유한 기간분만 공제받도록 되었다. 상기 시행령은 특히 양도성 채권의 이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제111조의 개정 및 시행령 제112조의 신설과 함께 규정된 것이다.

개인이 보유한 채권의 만기상환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면 과세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권 양수인이 개인이면 그 양수인이 만기에 당해 채권의 상환시 이자발생기간의 전기간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므로 당해 채권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여 세금계산정산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양도인도 자기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될 세금을 안분하여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채권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데 일부 채권·증권의 소지자는 중도채권매매차익을 과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만기 도래전에 채권을 법인에 매도함으로써 실제로 아무런 조세부담도 없이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등의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② 개인소지채권의 양수인이 금융·보험업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법인이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는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한 채권 만기 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채권의 상환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금융·보험업자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이 금융·보험업의 본래 사업목적에 따른 수입금액이므로 일반 영리법인의 이자소득과는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이 중도에 금융기관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채권거래를 하면 전단계 소유자인 개인은 자기보유기간분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이는 금융·보험회사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금융·보험업자의 자기보유기간분의 이자소득만을 포함시켜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개인으로부터 채권을 중도 매입할 때 전단계 소유자인 개인에게서 개인보유기간분의 세금을 감안하여 매입하게 하고 중도 양도자인 개인도 자신의 이자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보험업자가 채권의 만기상환시에 지급받는 전기간분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도록 규정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법인세액 계산시에는 원천징수세액 중에서 자기가 보유한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납부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달성되었다.

③ 채권의 소지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본 법 시행령 제2조의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되었고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은 만기에 상환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이 채권을 비영리법인에게 중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까지도 비영리법인보유기간분 이자소득과 같이 비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비영리법인도 채권 중도매매행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포함시켜 과세되도록 하면서 영리법인과 같이 만기이자 수령시에 원천징수되도록 개정한 것이다.

④ 채권의 소지인이 기타의 영리법인인 경우

채권의 최종 소지인이 영리법인이면 채권의 만기상환시에 지급받은 전기간분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최종소지인이 원천징수당하고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계산시에는 동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다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왔다. 여기서 원천징수당한 세금 전액을 다시 공제받으므로 만일에 개인으로부터 개인보유기간분의 세금을 반영하여 매입한다면 법인세액계산시 과세소득에는 개인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자소득만을 포함시키면서 세액공제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부담분 세금을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는 불합리가 발생

한다.

또한 개인보유기간분 세금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고 전액을 다시 공제받으므로 당해 영리법인으로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경우에는 전소유자인 개인보유기간분 이자소득이 과세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만기에 채권이 이자소득을 수령함으로써 법인세를 전액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원천세액공제는 영리법인의 자기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였다. 중요 보유부분의 이자세액은 거래금액에서 순액반영되어 계산되고 거래금액에서 정산된다.

(3) 법인의 보유기간분 안분공제대상이 되는 채권·증권의 범위

법인의 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안분계산공제는 소득세법 제 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을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채권 등의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등,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이 해당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10. 3. 22 개정)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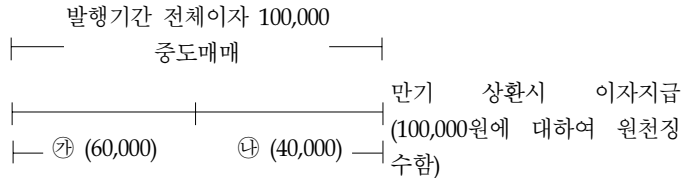
여기서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 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의 안분계산방법과 사례

① 보유기간별 계산논리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표시한다.

채권의 발행 시점



상기 도식에서 최종소지자인 ㉡는 100,000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등의 각자 보유기간별로 안분공제된다. 즉,

㉠ ⇨ 직접적으로 원천징수되지는 않았으나 자기가 보유한 기간분 60,000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중도매각시 보유기간분 이자 60,000원에서 해당 세액 8,400(=60,000×14%)원을 뺀 나머지 금액 51,600원(=60,000원-8,400원)만 계산지급받는다. 나머지 차액은 채권매각손익으로 회계반영한다).

㉡ ⇨ 직접적으로 100,000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하였으나, 자기가 보유한 기

간분인 40,000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만을 공제받으며, ㉠가 보유한 기간분 60,000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8,400원=60,000×14%)만큼을 구입시 저가로 구입하였고 최종 이자지급시 해당액을 원천징수 당해 등가거래정산된다.

시행령 제113조에서 채권·증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 방법에 의하면 개인과 법인간에 채권거래시 조세부담의 회피현상이 발생하였다. 최종소지법인의 경우는 당해 법인이 보유한 해당 기간분에 대한 이자수입만 법인세 과세소득에 합산되는 반면, 전체 기간분의 이자에 대한 총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발생하므로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함이다.

②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사례

【사 례】

당해 사업연도중 실제로 원천징수당한 총법인세 선납세액을 100,000이라 할 때,

i)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한 채권의 중도양도 : 직전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받았고 당해 사업연도중 당해 채권의 만기 전에 양도한 것

- 채권기간 전체의 총이자액을 50,000원이라 하고 공제받은 금액 7,500원임.
-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분 상당 이자액 30,000원

ii)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한 채권의 중도양도

- 채권기간 전체의 총이자액 60,000원(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라고 가정)
-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분 해당 이자액 40,000원

⇒ 채권거래가액에서 차감정산되는 공제대상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 i)의 기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 중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할 금액

$$50,000\text{원} \times 14\% \times (50,000\text{원} - 30,000\text{원}) / 50,000\text{원} = 2,800\text{원이고}$$

○ ii)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대상금액

$$60,000\text{원} \times 14\% \times 40,000\text{원} / 60,000\text{원} = 5,600\text{원이므로}$$

⇒ 따라서 실제 공제받을 원천징수세액총액 = 현금기준의 원천납부세액 + 중도양도채권이자 원천징수된 세액 - 중도양도채권이자 과다징수세액 = 100,000원 + 5,600원 - 2,800원 = 102,800원

(5) 채권보유기간분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방법

채권의 이자계산기간 도중에 매매한 경우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은 각자의 채권보유기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본 법 시행령제113조제1항·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지급방식 및 원천징수시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방법이 다르다.

① 이자의 후지급조건부 채권·증권의 양도

이자의 후지급조건부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하고 만기시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면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계산한 금액만을 이자수취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고,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에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양도한 법인이면 직접 원천징수 당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이자의 선지급조건부 채권 등의 중도보유

이자의 선지급조건부 채권 등의 경우에는 이자 선지급조건부 채권 등의 경우와 반대가 되는데,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한 법인은 직접 원천징수당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선이자를 지급받은 후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양도한 법인은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시행령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시행령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데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한 채권 등의 경우 당해 채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이자계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연도 종료일이 도래하면 일단 이자계산기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당해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였는지 판단하여 정산한다.

만일 당해 이자계산기간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였다면 정산이 필요없으나 당해 이자계산기간 만기 전에 양도하면 시행령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

과하여 공제한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③ 채권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채권의 보유기간은 사실상의 보유기간을 말하는데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취득일은 산입하고 양도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채권 등을 어음관리구조(CMA) 등의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은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만 종합금융회사가 차입하거나 예탁받은 채권 등의 보유기간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종합금융회사가 취득한 채권 등을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매수하였을 때 이러한 환매수기간이나 고객에게 조건없이 매도한 후 매수한 때 까지의 기간은, 당해 기간중 당해 채권 등의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해 금융회사의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6) 채권·증권의 중도매매시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중도보유채권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등의 익금 및 손금처리

중도보유채권을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는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처리대로 따라가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보유기간별로 안분계산 공제받아 중도양도자가 직접 원천징수되지 않고 공제받는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중도취득자가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각자의 회계반영으로 정리되었다. 즉, 보유기간분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익금과 손금을 기업회계기준의 개념에 의한 회계처리에 일치시킴으로써 기업회계기준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더 이상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는 뜻이다.

또한 이자를 선지급하는 채권 등의 경우에는 이자계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양도하게 되면 당해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추가납부하게 되는데 이자지급시에 원천징수된 세액으로서 상기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공제하지 못한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 **중도보유채권 매매시의 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

채권 중도매입시 전소지인에게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매입금융기관이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공제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당해 회사보유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만을 선급법인세로 계상하여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기업회계상의 적정 회계처리이다.

보유채권 중 이자를 선지급하는 채권 등이 매입되었다면 실현되지 않은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모든 이자를 미실현수익으로서 선수수익이자의 부채계정에 계상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은 선급법인세로 처리하며,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실현된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미실현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선급법인세에서 감소시킨다(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참조).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은 기준세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되었다.

③ **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세액의 세무처리 변동과정**

1984년 10월 5일자로 상기 시행령 제113조(중전 제91조의3)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요령이 실무상 정립되지 못했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중도양도자가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중도취득자가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일관되었었다. 이에 대해 증권관리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예규 75-420(86. 12. 12)(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 20-56으로 규정)이 발표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자산 및 부채로 처리하고 총액으로 수익계상하는 개념이 정립되었는바, 1987년 7월 28일자 재무부의 유권해석은 기업회계기준예규가 발표되기 이전의 국세청 유권해석이 타당하다고 번복하였다. 따라서 중도양도자가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및 중도취득자가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양도하는 법인은 원천징수당하

지 않고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익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납부 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 후 순이익이 증가되고 중도에 취득하는 법인은 원천징수당하는 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손금에도 산입하지 못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만큼 법인세 후 순이익이 감소되는 논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는 중도양도자가 공제를 받는 만큼 중도취득자는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등의 가격조절에 의하여 원천세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으나 이는 계산절차가 복잡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해석에 의한 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예규와 불일치 함으로써 기업회계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향상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1989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서는 1987년 5월 16일자 국세청의 유권해석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현재의 시행령 제113조제9항을 신설하게 된 것인데, 상기 기업회계기준예규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처리가 합리적이고, 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수입이자의 인식이 상기의 기업회계기준예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 현재로서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원천징수세액의 추가납부에 대한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3) 원천징수된 납부세액의 공제시기

①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공제

법인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의 차감순액을 지급하는바, 원천납부된 세액은 원천납부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현금주의개념의 원천납부세액공제

소득수취자 입장에서 수입이자소득은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였더라도 당해 소득을 수취하지 못하면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 못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실제로 수취할 때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해 소득의 익금산입과세연도와 원천징수세액의 차감

및 공제 혹은 환급연도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천징수세액은 현금 기준의 개념에 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과거 사업연도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여 본 법 제71조제3항에 의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세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징수당한 후 거래상대방인 소득의 수취자로부터 소정의 원천징수세액을 반환받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다면 당해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은 그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당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당시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있다면 거래쌍방은 세심한 주의를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4. 세액의 납부절차

1) 납부기한과 과세표준 신고

본 조 제1항은 법인세의 적법신고기한(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적법신고기한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결정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차감납부할 세액 혹은 신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적법한 납부기한에 대해 적법한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하여 일반적으로는 같은 날 신고 및 납부하지만 기한(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말일) 이내라면 동시의 신고납부나 선신고 후납부 및 선납부 후신고도 무방하다.

2) 납부방법

법인의 신고납부세액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및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한다. 한국은행 및 국고수납 대리점이나 체신관서에 납부할 경우는 국세징수법상의 소정납부서로 납부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접수한다.

관련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01조 [납 부]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II. 법인세의 분납 (법 제64조제2항)

1. 법인세분납의 개념 · 요건 · 기한

① 일시적 자금부담완화, 1월간

법인세의 분납제도는 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 일시적인 다액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원활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50%)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1개월)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시의 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중소기업이면 2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분납이 가능하려면 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요건이다. 여기서 분납세액은 첫회의 납부기한(종료일부터 3개월) 경과 후 1월 이내(중소기업이면 2월 이내)가 분납 기한이다.

만약 법인의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기한 연장된 바로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1월이 되는 날이다. 만일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다음 날 등으로顺延되면 분납기한도 그顺延된 날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다.

2. 분납방법 및 분납금액

① 최소 1천만원 초과외 경우로 일반적으로 50% 이하

법인세의 분납은 분납요건인 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납여부를 선택하는데 신청사항도 아니고 승인사항도 아니다. 분납을 선택하여 분할납부하면 된다. 법인의 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납부할 세액을 임의분할하여 납부하지 않고 다음의 시행령 규정과 같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로 한다. 총 납부할세액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첫회 납부금액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만 분납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01조 [납 부]

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상기 시행령을 부연하면 분납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이면 첫납부기한내에 최소한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첫납부기한내에 최소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총 납부할 세액 중 '분납할 수 있는 세액(50% 이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첫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분납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에 분납할 세액의 기재란에 기재하여 의사표시하여야 한다.

물론, 50% 금액 등으로 제대로 분할납부하기만 하였다면 신고서 서식 등에 분납계산액을 잘못 기록한다고 문제는 없으나 50% 이하의 숫자가 되도록 단수를 조정한다.